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지역구 특수품질 특수검사2반	성 명	박정호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3 잔업 거부 ② 10/14 특근 거부 ③ 10/16 잔업 거부 ④ 10/17 잔업 거부 ⑤ 10/18 잔업 거부 ⑥ 10/19 잔업 거부 불참 2회 적용				
		불참 횟수 : 7회 (쟁의시 7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이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현대위이지회 지회장 정 광 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3지역구 구동생산	성 명	안문병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③ 10/10 잔업 거부 ④ 10/11 잔업 거부 ⑤ 10/13 잔업 거부 ⑥ 10/16 잔업 거부 ⑦ 10/17 잔업 거부 ⑧ 10/18 잔업 거부 ⑨ 10/19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7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5지역구 스마트 공작제품검사반	성 명	이현모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 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1 잔업 거부 ② 10/12 잔업 거부 ③ 10/14 특근 거부 ④ 10/16 잔업 거부 ⑤ 10/17 잔업 거부 ⑥ 10/18 잔업 거부 ⑦ 10/19 잔업 거부 불참 2회 적용 /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5지역구 스마트 공작제품검사반	성 명	양정용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1 잔업 거부 ② 10/13 잔업 거부 ③ 10/16 잔업 거부 ④ 10/17 잔업 거부 ⑤ 10/18 잔업 거부 ⑥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석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6지역구 차부보전 보전1반	성 명	배재준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③ 10/10 잔업 거부 ④ 10/11 잔업 거부 ⑤ 10/12 잔업 거부 ⑥ 10/16 잔업 거부 ⑦ 10/17 잔업 거부 ⑧ 10/18 잔업 거부 ⑨ 10/19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6지역구 차부품관1 구동공정검사반	성 명	박기제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2 잔업 거부 ⑤ 10/13 잔업 거부 ⑥ 10/16 잔업 거부 ⑦ 10/17 잔업 거부 ⑧ 10/18 잔업 거부 ⑨ 10/19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6지역구 안전보건 안전지킴이	성 명	양용모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2 잔업 거부 ⑤ 10/13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⑥ 10/16 잔업 거부 ⑦ 10/17 잔업 거부 ⑧ 10/18 잔업 거부 ⑨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6지역구 차부품관3 구동부품검사반	성 명	김한걸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8 잔업 거부 ⑧ 10/19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6지역구 차부품관3 구동부품검사반	성 명	이인규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8 잔업 거부 ⑧ 10/19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7지역구 구동생산 액슬가공2반	성 명	박찬문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⑤ 10/12 잔업 거부 ⑥ 10/13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⑦ 10/16 잔업 거부 ⑧ 10/17 잔업 거부 ⑨ 10/18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8지역구 구동생산 엑슬조립1반	성 명	서승우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②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③ 10/16 잔업 거부 ④ 10/17 잔업 거부 ⑤ 10/18 잔업 거부 ⑥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0지역구 구동생산 액슬조립3반	성 명	허광호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④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8 잔업 거부 ⑧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1지역구 특수품보 특수검사1반	성 명	김동봉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③ 10/10 잔업 거부 ④ 10/12 잔업 거부 ⑤ 10/13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⑥ 10/16 잔업 거부 ⑦ 10/17 잔업 거부 ⑧ 10/18 잔업 거부 ⑨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3지역구 구동생산 PTU가공1반	성 명	권명현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2 잔업 거부 ⑤ 10/13 잔업 거부 ⑥ 10/18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4지역구 차부생관 자재2반	성 명	제해육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5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4지역구 차부생관 자재2반	성 명	박상록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2 잔업 거부 ⑤ 10/13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⑥ 10/16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5지역구 구동생산 PTU조립1반	성 명	조현이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8 잔업 거부 ⑥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5지역구 구동생산 PTU조립1반	성 명	한홍숙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7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6지역구 구동생산	성 명	김용석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6/15 23'임투 출정식 ③ 10/10 잔업 거부 ④ 10/11 잔업 거부 ⑤ 10/12 잔업 거부 ⑥ 10/13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⑦ 10/16 잔업 거부 ⑧ 10/17 잔업 거부 ⑨ 10/18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7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9지역구 차부생관 자재2반	성 명	박상수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⑤ 10/16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5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9지역구 차부보전 보전2반	성 명	이창민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8 잔업 거부 ⑧ 10/19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9지역구 차부품관2 등속공정검사반	성 명	이홍구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9/18 23'임투 중식 결의대회 ③ 10/10 잔업 거부 ④ 10/11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8 잔업 거부 ⑧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7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19지역구 차부품관2 등속공정검사반	성 명	이현욱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4 특근 거부 ② 10/17 잔업 거부 불참 2회 적용 ③ 10/18 잔업 거부 ④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5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0지역구 등속생산 CVJ가공4반	성 명	김성화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2 잔업 거부 ⑤ 10/13 잔업 거부 ⑥ 10/16 잔업 거부 ⑦ 10/17 잔업 거부 ⑧ 10/18 잔업 거부 ⑨ 10/19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0지역구 등속생산 CVJ가공2반	성 명	주술돈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6/23 상반기 조합원 교육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8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7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0지역구 등속생산 CVJ가공4반	성 명	김석숙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8 잔업 거부 ⑧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7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1지역구 차부생산지원팀	성 명	이현호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5 23'임투 출정식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2 잔업 거부 ⑤ 10/13 잔업 거부 ⑥ 10/16 잔업 거부 ⑦ 10/17 잔업 거부 ⑧ 10/18 잔업 거부 ⑨ 10/19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9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1지역구 등속생산부	성 명	심재형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8 잔업 거부 ⑧ 10/19 잔업 거부 10/27 경고장 (1차) 발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1지역구 등속생산 CVJ열처리반	성 명	차수환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제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제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5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10/10 잔업 거부 ③ 10/11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7 잔업 거부 ⑥ 10/18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5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함.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1지역구 등속생산 CVJ가공3반	성 명	최원배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4 특근 거부 ② 10/16 잔업 거부 ③ 10/17 잔업 거부 ④ 10/18 잔업 거부 ⑤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6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현대위아지회 지회장 정 광 식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23지역구 차부품관1 구동공정검사반	성 명	김성훈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10/10 잔업 거부 ② 10/11 잔업 거부 ③ 10/12 잔업 거부 ④ 10/13 잔업 거부 ⑤ 10/16 잔업 거부 ⑥ 10/17 잔업 거부 ⑦ 10/18 잔업 거부 ⑧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8회 (쟁의시 8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또한 4호에 의거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 정권 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불참자처리세칙 위반 경고장 (1,2)차

발부일자	2023년 12월 7일					
발부대상	지역구 소 속	평택분회 차부품질보증 고객지원반	성 명	이상만	직책	조합원
경고적용	불참자처리세칙	제5조 (처리대상) 지회 회의 및 지회 회의체에서 결정된 교육과 각종 집회 및 쟁의행위 시 무단으로 불참한 자를 처리 대상으로 하며 행동지침 사항을 위반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쟁의행위시와 일상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6조 (처리방법) 1. 불참횟수에 따라 지회장이 처리하고 회의체에 보고한다. 1) 5회(쟁의시4회) 불참 시 : 1차 경고장 발부 2) 7회(쟁의시5회) 불참 시 : 2차 경고장 발부 지회유인물(지회게시판, 홈페이지포함) (명단공개) 3) 9회(쟁의시6회) 불참 시 : 사유서 제출 및 지회에서 제공하는 선물, 경조비혜택과 피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4) 12회(쟁의시7회) 불참 시 : 지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정권이상의 징계로 처리한다. 2. 출석 확인 및 선별에 대한 권한은 지회장이 지명 한 자에게 있고 총괄은 지회장이 한다. 3. 제재조치를 당한 조합원이 제재결정이 통보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지회에 제출 할 경우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3'임투 쟁대위 투쟁지침 1호	불참자 처리세칙 6조에 의거하며 특별결의 한다. <u>2023년 10월 10일 부터 잔업 및 특근을 전면 거부한다.</u> ▶ 잔업 1회 실시 → 불참 1회 적용 ▶ 특근 1회 실시 → 불참 2회 적용				
불참내용	지침불참	① 6/1 23'단체교섭 요구안 설명회 ② 10/12 잔업 거부 ③ 10/13 잔업 거부 ④ 10/16 잔업 거부 ⑤ 10/17 잔업 거부 ⑥ 10/18 잔업 거부 ⑦ 10/19 잔업 거부				
		불참 횟수 : 7회 (쟁의시 6회 포함)				
상기 조합원은 현대위아지회에서 불참자처리세칙 제6조 1항 1,2호에 의거하여 경고장 (1,2차)을 발부하며 지회 유인물, 지회 게시판, 지회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와 3호에 의거하여 사유서 제출 및 지회 제공 선물, 경조비 혜택, 피 선거권을 1년간 제한한다. ▶ 제한기간 : 2023. 12. 7. ~ 2024. 12. 6 (1년)						

